



바른사회시민회의 Citizens United for Better Society

@FactBrief

CUBS FACT BRIEF | 2016년 3월 29일 | 발행처 바른사회시민회의 | 발행인 전삼현 | www.cubs.or.kr

<공직선거법 바로알기 시리즈②>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와 할 수 없는 단체¹⁾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이옥남)

1. 법규상 선거운동 가능한 단체와 그렇지 않은 단체

원칙적으로 기관·단체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그 명의 또는 대표자(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에 한함)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 금지)에서 규정한 단체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우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기관이나 단체²⁾와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 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³⁾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한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가족이 임원으로 있거나, 후보자 등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후보자 등이 운영경비를 부담하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단체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루어진 기관·단체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2. 주요 선례로 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

법령에 규정된 사항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인지 여부가 명확히 판단이 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에 기존의 선례를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의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1) 본 보고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의도지원단에서 발행한 『단체의 선거운동 안내』(2016. 2)를 발췌 및 요약하여 작성한 것임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 포함),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연료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과 그 중앙회, 「지방공기업법」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
- 3)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등이 이에 해당

1) 노동조합

노동조합이 내부규약 등에서 정한 통상적인 의사결정방법과 절차에 따라 선거에서 지지할 정당을 결정하고 이를 보도자료 형식으로 각 언론사에 배포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또한 노동조합이 지지 후보자 파악을 위해 산하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법 제108조나 제254조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ARS를 이용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노동조합이 공직선거 정책연대 대상 후보자 결정을 위해 전 조합원에게 설문조사를 하는 행위, 정책연대 후보자 결정 및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노동조합 주관 전국노동자대회에 입후보예정자를 단순한 내빈으로 초청하는 행위, 노동조합의 홈페이지에 지지 후보자의 이름과 지역구 등을 표시하여 POP-UP으로 게시하는 행위, 노동조합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후보자등록사실이나 그 후보자를 위하여 할 자원봉사 활동 등을 기관지·내부문서 등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고지·안내방법에 따라 소속 구성원에게 알리는 행위는 가능하다.

선거기간 전에 회원총회에서 회원들의 투표를 통해 지지대상자를 결정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다만,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와 유사한 선거운동기구의 설치,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표지판·어깨띠 등 휴대·착용, 인쇄물 배부, 확성장치 및 자동차를 이용한 연설, 신문광고, 구내방송, 집회개최, 거리행진·연호, 서명운동 등 선거법에서 제한·금지하는 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노동조합이 대담·토론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선거와 무관한 내용으로 입후보예정자 초청강연회를 개최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노동조합이 정책연대 후보자를 결정한 후 그 명의 또는 대표자 명의로 조합원들에게 전자우편이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후보자의 지지호소를 하는 행위, 선거기간 중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로 결정하고 노동조합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와 조합원에 대해 노동조합의 결정에 따르도록 권고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2) 시민단체

시민단체가 허위사실이나 후보자비방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으로 특정 후보자를 낙선대상자와 집중낙선대상자로 선정 발표하면서 이를 언론에 보도되도록 한 행위는 합법적이다. 다만,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가두행진·불법유인물 배포 등의 방법으로 특정 후보자의 낙선운동을 하는 것은 위법이다.

단체가 그 설립목적과 관련 있는 특정 선거공약을 철회 또는 채택하여 줄 것을 해당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에게 건의 및 요구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다만,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그 선거공약을 반대하거나 규탄하기 위한 집회를 개최하거나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07조 또는 제254조에, 그리고 집회가 선거기간 중에도 계속 될 경우 제103조에 위반되며, 그 단체가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결성된 경우 법 제87조에 의해 설립·설치가 금지된 사조직에 해당된다.

한국노년유권자연맹이 선거운동기간 중에 단체의 명의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다만,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할 것을 표방하는 경우에는 공명선거추진활동은 할 수 없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3) 친목동호회 등

후보자가 되려는 산악회의 회원이 순수하게 등산 목적의 산악회 회장으로 취임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다만,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산악회를 설립하거나 설립하게 하는 경우는 입후보예정자의 산악회장 취임 여부를 불문하고 법 제87조제2항에 위반된다. 동창회 내부에서 단순히 후보단일화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4) 기타 단체 등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소속회원을 대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위원의 의정활동에 관하여 여론조사를 하고 그 여론조사의 결과를 당해 단체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두는 행위는 가능하다. 다만,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또는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들이 선거운동기간 중 합동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의견을 공표하거나, 단체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견을 그 기관지·내부분서·게시판 등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고지·안내방송법에 따라 소속 구성원에게 알리는 행위는 가능하다. 다만, 지지·반대 의견을 게재한 신문광고·현수막의 거리게시 또는 별도의 인쇄물, 시설물을 통해 일반선거구민에게 알리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90조, 제93조, 제95조에 위반된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지단체로 등록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연합하여 교육감 후보자를 추대하기 위한 추대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가 내부회원만을 대상으로 내부규약 등

에서 정한 통상적인 의사결정방법과 절차에 따라 사전선거운동 등 선거법에서 제한, 금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추대할 후보자를 결정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3.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의 사례

1) 노동조합

노동조합이 선거운동기간 중에 옥내에서 특정 후보자를 초청하여 공약 등이 포함된 강연을 듣는 행위와 정책연대 후보자 결정을 위한 ARS 투표에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홍보하기 위한 라디오 광고를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노동조합이 정책연대 후보자를 결정한 후, 총회 등 여타의 집회를 개최하여 지지를 결의하는 행위, 정책연대를 결정한 후보자를 홍보하는 현수막 등을 노동조합 건물의 외벽에 걸거나 인쇄물을 배포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노동조합이 구성원인 조합원 개개인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결의 내용에 따르도록 권고하거나 설득하는 정도를 넘어서 이를 강제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수막을 사업장내 또는 외벽에 게시한 행위도 금지된다.

2) 기타 단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임·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축산업협동조합의 노동조합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표방하는 목적여하를 불문하고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포럼을 설립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설립이 금지된 사조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국회의원 이 그 포럼의 대표가 되거나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선거와 무관한 내용으로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하여 단순히 강연을 듣는 것은 무방하다.

공무원노동조합과 그 소속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는 지원하는 행위는 위법이며, 지지후보 결정을 위한 조합원 총회 시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복수 혹은 단수의 후보자를 알리기 위해 조합선관위가 발행하는 포스터, 신문, 대자보에 각 후보자의 이력과 정책공약 등이 담긴 선전물을 조합원에게 배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단체가 선거기간 중에 후보자의 공약평가발표회를 개최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단체가 낙천·낙선후보자 명단을 게재한 홍보물이나 별도의 유인물 등을 제작하여 거리집회,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배포하고 유권자를 상대로 지지서명운동을 하며, 낙천·낙선운동의 문구가 적힌 스티커를 배포·부착하는 행위도 위법이다.

또한 단체가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결정한 내용이 포함된 유인물을 단체구성원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한 경우 및 지지후보 결정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채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의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소속구성원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한 행위는 위법이다.